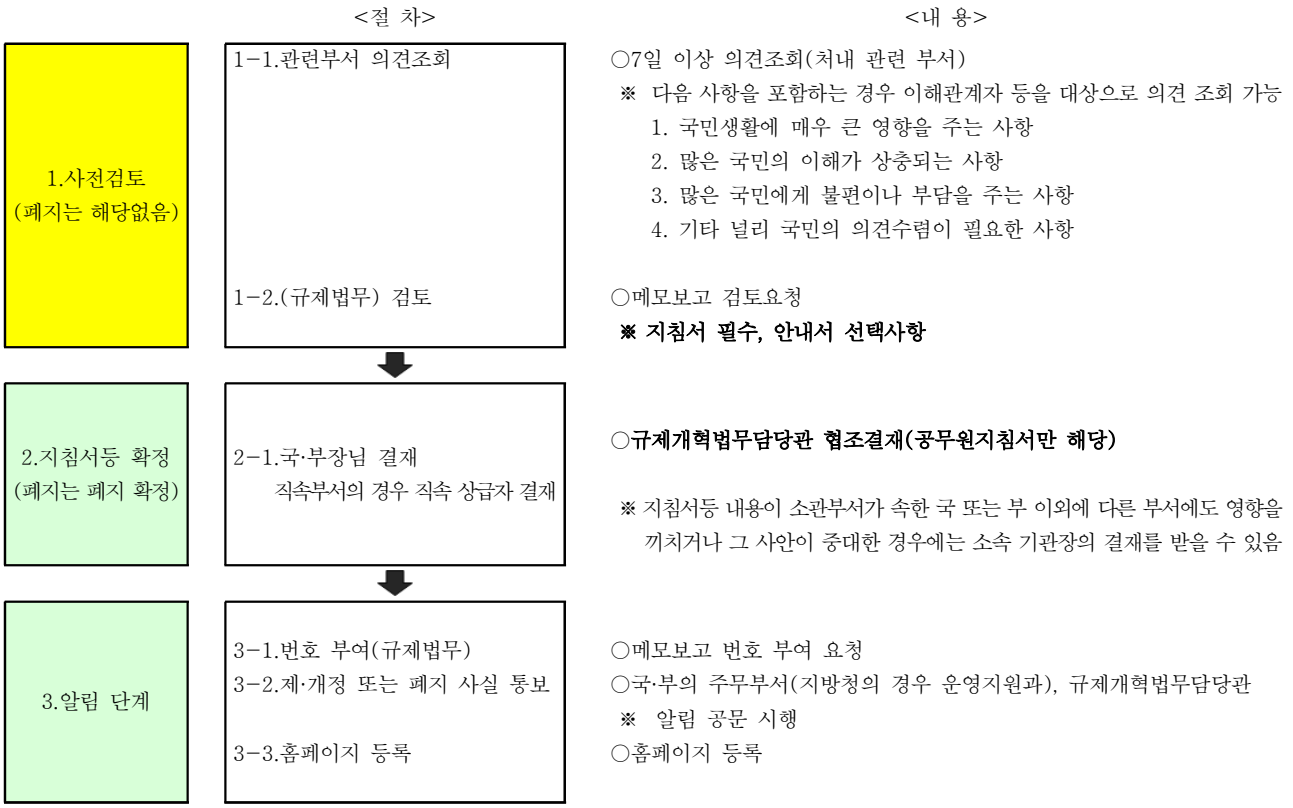
지침서등 제·개정, 폐지 절차

공무원지침서등 제·개정 및 폐지 절차도(요약)



지침서등 서식 요건

1. 제명 뒤에 공무원 지침서 또는 민원인 안내서인지 여부를 괄호 안에 병기하여 표시
2.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침서등의 제·개정 점검표를 작성하여 지침서등에 첨부
3. 공무원 지침서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안내문을, 민원인 안내서인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안내문을 첨부

제·개정 또는 폐지 결재 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

1. 제·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 및 주요내용
2. 제정안·개정안 또는 폐지안
3. 시행일(결재일로부터 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4. 식약처등 홈페이지에 지침서등을 공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5.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지침서등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6. 그 밖에 제·개정 또는 폐지에 필요한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점검표

명칭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여부	□ 이미 등록된 지침서·안내서 중 동일·유사한 내용의 지침서·안내서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기존의 지침서·안내서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서·안내서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아래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	
	□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의 내용을 단순 편집 또는 나열한 것입니까?	□ 예 □ 아니오
	□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고의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일회성 지시·명령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외국 규정을 단순 번역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신규 직원 교육을 위해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예'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침서·안내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침서·안내서 구분	□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용)	□ 예(☞지침서) □ 아니오
	□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특정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외적인 입장을 기술하는 것입니까? (민원인용)	□ 예(☞안내서) □ 아니오
기타 확인 사항	□ 상위 법령을 일탈하여 새로운 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민원인을 구속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상위법령 일탈 내용을 삭제하시고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음.

년 월 일

담당자
확 인(부서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이 지침서는 OOO의 세부 지침을 정한 것으로서 (발행기관의 명칭) 관련 부서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본 지침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 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지침서는 ○○년 ○월 ○일 현재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무원 지침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세부 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임(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 본 지침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소관부서 및 소속 기관의 명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43-719-0000

팩스번호: 043-719-0000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이 안내서는 OOO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발행기관의 명칭)의 입장을 기술한 것입니다.

본 안내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 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안내서는 ○○년 ○월 ○일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인 안내서"란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특정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외적인 입장을 기술하는 것(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 본 안내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소관부서 및 소속 기관의 명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43-719-0000

팩스번호: 043-719-0000